

## 제 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 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18 조에 의거 제 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 년 3 월 22 일 (화요일) 오전 10 시

2. 장 소 : 상장회사회관 B1 대강당 (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)

3. 회의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나. 결의사항

제 1 호 의안 : 제 4 기 재무제표 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
※ 현금배당 : 3,500 원 (액면 배당을 : 70 %)

제 2-1 호 의안 : 사내이사 이휘령 선임의 건

제 2-2 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석일 선임의 건

제 2-3 호 의안 : 사외이사 박신영 선임의 건

제 3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※ 단, 제 1 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됨

4.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
2019 년 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,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(명부) 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 368 조의 4)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)를 도입하였습니다.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

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2년 3월 12일 오전 9시~ 2022년 3월 21일 오후 5시  
-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#### 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※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. 주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. 끝.

2022년 2월 21일  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 
주식회사 세아제강  
대표이사 이휘령 (직인생략)

□ 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[사내이사 후보]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 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임기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이휘령	1962.04.25	현) (주)세아제강 대표이사 부회장	이사회	-	친인척	3년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김석일	1961.04.30	현) (주)세아제강 포항공장 공장장 및 대표이사/전무이사	이사회	-	-	3년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※ 상기 임기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[사외이사 후보]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임기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박신영	1958.02.21	현)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복주택후보지 선정위원회 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	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	-	-	3년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※ 상기 임기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□ 제 3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[신구조문 비교표]

현행	개정안
제10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,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	제 10 조(동등배당) 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
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<u>관련 업무규정</u> 에 따른다.
< 신설 >	제 12 조(주주명부 작성, 비치)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 ② 이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.

<p>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3 조(기준일)</p> <p>① 이 회사는 매년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 16 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p> <p>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 16 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p> <p>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<u>사채권</u>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<p>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
<p>제 29 조(임 원)</p> <p>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,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.</p> <p>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 29 조(임 원)</p> <p>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,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.</p> <p>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수 있다.</p> <p>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

부 칙(2022. 3. 22)

<신설>

이 정관은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